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8년 2월 19일
- 나. 발 의 자 : 박미영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미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제정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총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국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2018. 1월 현재 우리구에는 297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은 건축 자재 및 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외부 미세먼지 등 실외 공기 오염 물질의 실내유입 등으로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내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와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이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2
----------	-----

발의년월일: 2018년 2월 19일

발의자: 박미영 의원 외 3명

## 1. 제안이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0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18. 2. 9. ~ 2. 14.):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